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2018.01.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및 동 규정 별표 4의2(신용정보 관리기준), 금융감독원의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감독세칙'이라 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장(신용정보의 관리), 내부통제기준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 관리 등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 등을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사규와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등

제4조(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①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이 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정보유출 대응매뉴얼(contingency plan)의 마련
 8. 관리적 보안대책 시행결과에 따른 시정·개선에 필요한 조치
 9.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세척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2. 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 ③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과정에서 임직원의 신용정보 무단조회, 오·남용 등 주요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직원으로 하여금 경위서의 제출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위반사항의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공개)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공개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 지원조직) ① 신용정보 관리·보호 업무에 관한 관리적 보호대책에 관한 지원조직은 준법감시부서로 한다.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관련 부서에 신용정보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신용정보관련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신용정보의 처리기준

제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에 대한 동의)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국내거소신고번호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3.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9조(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①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상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제10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필수적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
가.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제3자 제공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의 관련성
 2. 선택적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
가.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3자 제공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사실
나.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3자 제공 시의 혜택
- ③ 회사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제11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회사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녹취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8조제2항 각 호, 제9조 각 호,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하, "동의시 필수고지사항")과 제5항의 고객권리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양식에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거나 각각의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복수인 경우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동의 받는 경우에는 제6장(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따른 고객의 권리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고객권리안내문을 사전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동의방식의 특성상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회사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수탁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 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에 따른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주요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영 별표 2 의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공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

2.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보관 기간(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

2. 개인신용정보를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의 결과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신용정보 보안 약정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탁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기업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중 1인 이상을 지정 한자

③ 회사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본다.

④ 회사가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의 Ⅱ.3.(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에 따른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수탁자에게 교육하거나 수탁자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2.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

⑥ 회사가 수탁자와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탁자 점검 및 교육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법 제4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신용정보회사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수탁자가 그 신용정보의 처리를 제3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재수탁자간의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에 따른 수탁자 점검 및 교육확인서와 재수탁자 임직원의 보안서약을 징구하여야 한다.

1.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고객정보의 내용
2.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재수탁자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4. 재수탁자의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5. 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감독하는 사항(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제14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영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선택적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필수적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의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2. 회사가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필수적 개인신용정보의 접근권한 부여 및 그 이용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 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 회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제2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된 날이라 함은 계좌의 적극적 폐쇄, 보험의 해약(소멸), 퇴직연금의 해지 등 고객과의 모든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제4장 신용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6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하여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회사와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를 포함)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오·남용 금지) ① 임직원은 고객의 신용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정보가 분실, 유출, 도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 받아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불필요한 권한을 부여 받았을 경우 해당 권한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권한의 회수 요청 등의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관련정보를 판매, 대여 등 제공하는 행위 및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마케팅, 기타 업무의 목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범위의 고객의 신용정보에 대한 이용이 업무상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의 이상·과다 조회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투자권유대행인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 투자권유대행인을 관리하는 부서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법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영업과 관련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2.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
 3.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정보 파기 여부
 4. 제3호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② 투자권유대행인 관리부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기관(금융투자협회)에 알려야 한다.

제20조(조사 및 제재) ①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련부서, 영업점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신용정보의 누설 통지 등

제21조(개인신용정보 누설의 예시) 회사가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 누설로 볼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제22조(누설 통지 방법 등) ① 회사는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회사는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기간 동안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 : 15일
 2.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 15일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 : 7일
-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제24조에 따른 누설 피해 최소화 대책 등에 따라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미확인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누설 신고) ① 회사는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4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감독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누설신고서]에 따른 신용정보 누설 신고서를 통하여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 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누설 피해 최소화 대책) 회사는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 개인정보 유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2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주체가 7일 이내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②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의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의 이용이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한 제공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3. 성과관리
4. 위탁업무의 수행
5.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한다.

⑥ 신용정보주체가 <별지 제4호 서식>을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에 대해 통지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감독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서]에 따라 제1항의 조회사항(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에 따라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제6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회사는 제6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정기적으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간격을 연1회 이상으로 한다.

⑨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③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대상정보와 정정 청구사유를 받아, 정정청구 사유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 대해 처리한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경과 등을 우선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결과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회사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회사로부터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 ⑥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와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3. 회사가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4.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 ②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 제26조 제2항의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회사는 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의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신용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이 어려워지거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2. 유무선 통신
 3. 서면
 4. 영업점 방문을 통한 동의 철회서 제출 등
- ②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공 및 연락 중지에 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신용정보 주체가 연락 중지에 대한 요청을 하였을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① 신용정보주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5년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3개월
- ② 회사는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삭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을 이용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사유의 근거 및 안전한 보관에 관한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삭제청구 처리 대장을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회사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하여야 한다.

-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4.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 1.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2. 신용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③ 회사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신용정보의 집중 및 관리 등

제31조(미수정보의 관리기준) ① 동결계좌 요건에 해당하는 미수발생 정보나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 발생정보(이하 '미수정보'라 한다)의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미수정보가 발생하거나 그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미수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장(신용정보의 관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4. 미수정보등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관리) ① 대출정보 등 신용거래정보,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기업 및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능력정보 등 신용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련 신용정보가 발생하거나 그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인터넷망 이용) 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인터넷망"을 통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지켜야 한다.

- 1. 신용정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신용정보 인터넷망의 조작자를 지정하고 동 사실을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터넷망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통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2. 인사이동, 기타의 사유에 따른 조작자 교체 임명시에는 지체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용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주)밸류시스템자산운용

1. 목적

- 본 매뉴얼은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응**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정의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법 제2조에서 정한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와 개인식별정보를 결합한 정보를 말함
- '개인(신용)정보'란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말함
- '개인(신용)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함
- '개인(신용)정보 유출'이란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신용)정보처리자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또는 누설된 모든 상태를 의미함
- 유출된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수량*, 암호화 여부**, 유출시기 및 개인(신용)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불문

II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응

【 대응 절차 요약 】

사고인지	○ 개인(신용)정보 유출 징후 또는 사고 발생 시 유출여부, 유출시기, 유출원인 및 유출규모(수량) 등 신속 확인
↓ 사고대응팀 구성	○ 내부 보고 및 사고대응 전담팀 운영 등 대응매뉴얼 시행 - 고객 통지대상, 범위, 절차 및 통지문구·고객 대응요령 등 마련 - 향후 고객들의 현장방문, 전화문의, 인터넷 접속 등이 일시에 집중될 것에 대비하여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 사전 준비* * 콜센터·통신회선인터넷 서버 확충, 현장인력 증원 등
↓ 고객 통지 및 정부기관 신고	○ 정보유출 사고 내역을 고객에게 신속·안전하게 통보 * 홈페이지에 정보유출 확인 조회 화면 제공 및 전자우편·문자메세지 발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 통지 ○ 금융당국 보고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 신고
↓ 피해신고 센터가동	○ 피해신고센터 가동 및 고객대응요령 전파
↓ 고객민원 대응	○ 민원처리 과정에서 점포혼잡 등 고객 불편 최소화 ○ 영업시간 연장(야간·휴일 연장근무), 후선인력의 영업점 투입 확대 등 혼잡 최소화 ○ 콜센터 직원 확대투입, 통신·인터넷회선 확충 등 대기시간 단축
↓ 고객안심 조치	○ 고객 신청이 있는 경우 증권카드, 보안카드 등 즉시 교체(무료) ○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알림서비스 제공(무료) ○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보호시스템 제공(무료) * 본인정보 조회 중지 요청권
↓ 피해구제절차	○ 정보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피해보상체계 신속하게 구축

【 유출된 개인(신용)정보의 건수 및 종류에 따른 등급 분류 체계 】

등급	개인(신용)정보 유출건수 및 종류	대응 절차 특징
1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출된 개인(신용)정보가 10만 건 이상이거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 주요 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신용)정보 1만 건 이상 	
2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출된 개인(신용)정보가 1만 건 이상이거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 주요 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신용)정보 1천 건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민원대응을 위한 영업시간 연장 또는 후선인력의 영업점 투입 확대 등 탄력적 운영
3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출된 개인(신용)정보가 1천 건 이상이거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 주요 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신용)정보 1건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대응팀을 직접적인 사고 관련 부서로제한하여운영가능
4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출된 개인(신용)정보가 1천 건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신고센터 가동 및 피해구제절차의 생략또는 대체가능

1. 사고인지

□ 사고의 인지 및 준법감시부서 보고

○ 업무상 고의·과실에 의한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 유출과 관련한 신고를 받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신용정보 담당자)에게 보고

※ 유출의 인지 경위 예

- USB 등에 신용정보파일을 보관 중 분실 또는 오전달
- 우편 등 신용정보포함 문서의 발송업무 중 과실에 의한 오발송
- 고객 등 제3자의 신용정보유출 사실안내 또는 관련 증빙의 확인요청 시
- 해킹 등에 의한 신용정보유출 피해 접수 또는 정보유출 협박 시

○ 보고방식은 유선보고 및 당일 중 유출 또는 신고접수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

□ 유출원인 파악 및 분석

○ 해킹, 바이러스, 시스템오류, 외부 인적침입 등 외부요인 분석

○ 문서, Data file, 관계자 및 관련 범위 등 내부요인 분석

담당 부서	진행 사항
신고부서	○ 사고의 인지 경위 및 신고내역에 대한 준법감시부서 보고
유출부서	○ 유출경로 및 경위 파악 (관련 유출 및 사용자 확인, 고의성 파악) - 전자적 문서인 경우 관련 권한 및 PC확인, 회수 및 복제

	<p>가능성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문서인 경우 회수 및 복사본 유/무 확인
보안관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침입 시 침입경로와 관련 시스템 및 서버확인 ○ 내부유출 시 고의 여부와 관련 PC 확인
준법감시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관련 신고의 접수 및 경위파악, 관련부서 통지 ○ 최종 유출 여부 판단

2. 사고대응팀 구성 및 운영

□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해당사의 유출관련 세부내용 파악, 법률상 의무사항 이행 및 피해확산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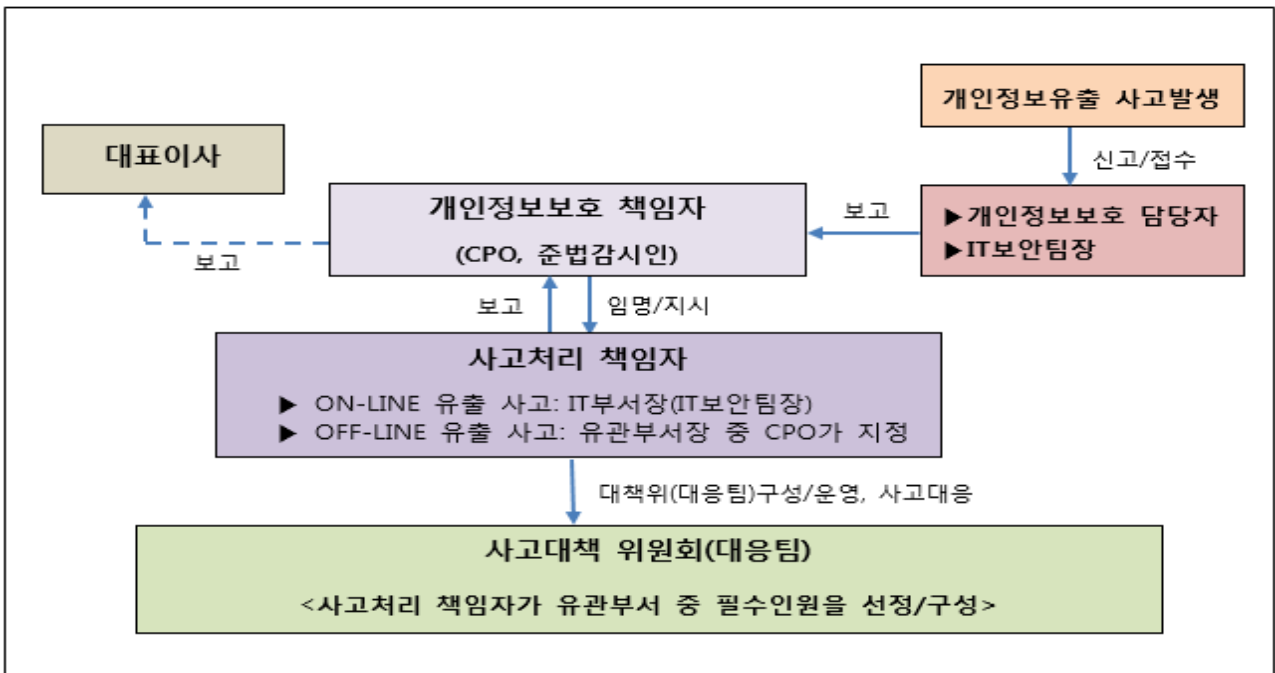
○ 고객 및 언론 응대,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해 관련 부서로 구성된 비상대책반 구성 . 운영 필요

□ 구성 및 부서별 주요 업무 (금융회사 업무분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담당부서	주요 업무
개인(신용)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대책반 운영업무 총괄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 관련 시행조치 사항 지휘 및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정보주체의 피해구제절차, 관련법령에 따른 외부기관 신고 - 개인(신용)정보 유출 관련 위기대응 체계 운영 공지 - 기타 법률상 필요한 제반조치 ○유출사고 관련 정책판단 진행사항 대표이사(또는 그룹) 보고
준법 및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 대응방안, 의사결정 사항 등 정책적 판단사항 검토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기관(법무법인)과 연계하여 법률적 리스크 등 검토 - 유출사고 관련 수사기관 경과사항 대응 및 대책반 공유 - 관련법령에 따른 외부기관 신고서 검토 및 작성 - 유출사고 고객 통지문(홈페이지 공지용) 검토 및 작성 - 고객 개별 발송문(우편,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검토 및 작성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당국 현장감독 업무 총괄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출사고 관련 IT 업무지원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유출사고 관련 개인별 유출확인 조회 화면 제공 - 고객센터 상담원의 응대 업무를 위한 개인별 유출확인 조회 화면 제공 - 고객 개별 발송문 관련 IT업무지원(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발송 등) - 콜센터·통신회선·인터넷 서버 확충

홍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출사고 관련 대외기관(언론사 등) 대응 ○유출사고 대고객 안내문 문구 최종 검토 - '준법 및 법무'에서 작성한 대고객 안내문 최종 수정 - 유출사고 대고객 안내문(홈페이지용) 공지(공지기간 포함)
총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개별 발송문(우편) 업무시행 - 우편물 발송 인쇄작업 시행 - 대량 우편발송으로 인한 우체국과의 발송시기 사전안내 - 우편물 발송 완료 후 우편물 발송 리스트 파기확인서 징구 ※ 우편물 인쇄 및 발송업무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개별 발송문 안내에 따른 후속업무(민원 등) 진행 ○유출사고 안내에 따른 고객상담센터 업무 지원 - 침해신고센터 연락처 생성 - ARS(자동응답) 문구 및 운영시간 안내 삽입 - 고객응대전화 폭주(예상)에 따른 전용회선 증대방안 검토
유출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출사고 현황, 피해방지 대책사항 마련 - 유출사고에 따른 세부 경과사항 보고 - 피해방지 대책사항 마련 보고 - 향후 유출사고 방지대책을 위한 강화조치 사항보고(교육, 점검 등)
인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인력 증원 및 인력 지원
영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출관련 영업점 공문 및 지침 공지 ○고객응대 매뉴얼 작성 및 공지

□ 사고대응 흐름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담당할 수 있음

3. 고객 통지 및 정부기관 신고

□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관련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

*개인(신용)정보 유출항목, 유출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 피해구제절차 등

【 고객 통지 관련 세부 내용 】

구 분	내 용
통지 방법	1.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필수사항) 2. 1번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1번 통지방법으로 연락 불가시 홈페이지 게시, 단 1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홈페이지에 7일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 *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및 지침 제28조, 제29조
통지 내용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1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통지 시기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안 때부터 지체 없이(5일 이내) 통보 단, 개인정보 구체적인 유출내용 확인 불가한 경우 다음사항 알리고 추후 확인된 사항 추가안내 가능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통지내용 중 확인된 사항 *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1항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0조
통지결과 신고	통지결과(통지내용·결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게시기간 및 내용 화면캡처 등 입증 자료 첨부) 등 지체 없이 신고기관에 신고 *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3항 *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
기타 관련 시스템구축	본인인증 후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한 유출확인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24시간 이내로 적용

□ 정부기관 신고 및 주요 연락처

○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에 신고해야 함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정보법), 행정자치부(개인정보 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망법)

【 정부기관 신고 관련 세부 내용 】

신고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택1)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택1)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택1)
근거 법령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고 사유	○1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1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분실·도난·유출사고 발생시 (방송통신위원회) ○해킹 등에 의한 침해사고 발생 시 (미래창조과학부)
신고 시기	○지체 없이(5일 이내) 신고	○지체 없이(5일 이내) 신고	○분실·도난·유출사고 발생시:그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24시간 이내) 신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 사고발생 시 즉시 신고
신고 방법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누설사실을 알리고 추가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신고서 제출	○전자우편·팩스·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출사고 신고 및 신고서 제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통지내용 신고 후 유출신고서 제출 가능	○분실·도난·유출사고 발생시: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중 어느 하나의 방법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 특별한 방법·절차는 없으며 신고기관에 즉시 신고
	[관련 양식] "신용정보누설신고서"	[관련 양식]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관련 양식]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신고 내용	○기관명·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누설된 시점·누설경위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	○기관명·통지여부·유출개인정보 항목·규모·유출시점·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등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기타사항 : 유출사고 발생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신고기관 외에도 감독당국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필요

【 주요 신고기관 연락처 】

기 관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인터넷사이트	비 고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안전과)	-	-	www.privacy.go.kr	관계 법령상 신고 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점검팀)	118	118@kisa.or.kr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로 일원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00-1529	-	www.i-privacy.kr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금융정보보호팀, 금융투자감독국	-	-	fines.fss.or.kr (금융정보교환망)	관계 규정상 보고 요

*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정보는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부기관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신고센터 가동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응대 및 민원·소송 등 분쟁 대응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객 및 회사 피해 최소화

【 피해신고센터 운영 관련 세부 내용 】

담당 부서	진행 사항
개인(신용)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대 스크립트 작성 ○ 개별 유출통지문 작성(전자우편, 우편, 문자메세지 등) ○ 유출관련 위기체계 시행 대내공문 발송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회선(00개)설치 ○ 대표번호 설치 ○ 전용회선 증설 필요시 대응방안 수립(콜센터 여유회선 사용 가능) ○ 홈페이지고객 개인별 유출확인 조회 화면 제공 ○ 상담원고객 유출확인 조회 화면 제공(발송구분, 발송일자 포함) ○ 전산응대 스크립트 조회구축
소비자보호 또는 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확보 및 스크립트 교육 ○ ARS(자동응답)문구 및 운영시간 안내 삽입 ○ 피해신고센터 스크립트 교육실시(상담원)
홍보,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소송 등 모니터링(분쟁조정위원회 등)

5. 고객민원 대응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 중 고객 불편 최소화 대책 시행

담당 부서	진행 사항
영업(관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 과정에서 점포혼잡 등 고객 불편 최소화 ○ 영업시간 연장(야간·휴일 연장근무), 후선인력의 영업점 투입확대 등 점포혼잡 최소화
소비자보호 및 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직원 확대투입, 통신·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대기시간 단축

6. 고객안심 조치

□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안심조치 즉시 시행

담당 부서	진행 사항
영업(관리) 및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신청이 있는 경우 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즉시 교체(무료) ○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제공(무료)
개인(신용)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보호시스템 제공(무료) <p>* 본인정보 조회 중지 요청권</p>

7. 피해구제 절차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발생시 구제절차 신속 시행

담당 부서	진행 사항
개인(신용)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보상 기준 마련
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보상 예산 확보 및 집행
소비자보호 및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보상 요청에 대한 심사

Ⅲ 관련 양식

1. 신용정보 누설 신고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5 관련 별지 제18호 서식]

신용정보 누설 신고서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누설신고서		처리기간 : 즉시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	
본점 또는 기관 소재지	대표자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누설된 시점		
누설 경위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관련한 피해구제 절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4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고인 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누설경위와 관련한 증거서류 등 관련문서 2.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관련한 증빙서류 등 관련문서		수수료 없음

2.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3.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신고서식]

사업자 개인정보유출신고서

(필수)가 표시되어있는 항목을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기관명(필수)		사업자번호(필수)			
사업자주소 (사업자등록기준)		웹 사이트 주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이 발생한 시점 및 경위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필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필수)					
이용자가 상담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하단은 접수기관에서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신고자는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접수기관	기관명(지역)	접수자명	연락처	이메일	접수일자

4. 고객 대응 스크립트

[샘플 서식]

가

「유출 피해고객」 응대

상담사 :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OO금융회사 ○○○입니다.

고 객 :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담사 :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유출통지문자를 받으셨다면 유출고객에 해당되십니다. 유출된 정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신 고객님의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확인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시] [본인확인 프로세스]

- 성명
- 성명 + 연락처
- 성명 + 계좌번호
- 성명 + 생년월일

고 객 : ○○○입니다.(기타 본인확인정보)

상담사 :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죄송하게도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중 [실제유출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신용)정보는 해커에 의해 유출되었지만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고 객 : 그게 왜 유출이 된거죠?

상담사 : [각 사별 유출사고 내용, 조치사항, 조치결과 안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외 고객 문의 사항은 상황에 맞게 안내합니다.]

상담사 : 고객님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

「유출 피해 없는 고객」 응대

상담사 :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OO금융회사 ○○○입니다.

고 객 : 개인(신용)정보 유출 때문이에요. 확인해 주세요.

상담사 :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 객 : 네

상담사 : 전화주신 고객님의 본인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별 본인확인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시] [본인확인 프로세스]

- 성명
- 성명 + 연락처
- 성명 + 계좌번호
- 성명 + 생년월일

상담사 :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다행히 고객님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고 객 : 다행이네요.

상담사 : 고객님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 유출 통지문

[샘플 서식]

가

「홈페이지, 우편」을 통한 통지

OO금융회사 000부(지)점 입니다. 먼저 고객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스템 점검 중, 회사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던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가 0000년 00월경 외부의 침입에 의해 유출되었을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출된 정확한 일시는 000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되면 추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성명, 주소, 전자우편이며 주요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인터넷뱅킹 회원 ID 및 비밀번호, 연락처는 뒷자리가 암호화처리(별표시 *)되어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금번 유출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출 우려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IP와 불법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취약성을 점검하여 방화벽 설치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여 고객님의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고, 개인(신용)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 및 악성코드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스팸메일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의사항 및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와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신용)정보 분쟁 조정이나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센터를 통해 피해를 구제 받고자 하실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및 피해접수 안내 >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OO금융회사 000부, ☎ 1588-XXXX(전담상담센터)

■ 인터넷홈페이지

- 유출가능 대상자 확인 : OO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대상인 경우 안내문 팝업

- Q&A 및 FAQ : OO금융회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OO금융회사 임직원 일동

나

「문자메세지」를 통한 통지

제목 : OO금융회사에서 알려드립니다.

OOO 고객님께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보호에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지난 OOOO년 O월경 불법적인 해킹으로 일부 고객님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유출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범인 체포 직후 전량 회수되었으나 혹시라도 전화광고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희 회사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면 구제절차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OO금융회사 임직원 일동

※개인(신용)정보 유출 확인 안내

홈페이지 : OO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대상인 경우 안내문 팝업

전담상담센터 : OOOO-OOOO

※연락처 변경 미등록 등으로 메시지를 수신하신 분이 해당 고객님의 아니실 경우에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첨1]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가. 이용목적

- 계약권유
-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계약 체결 및 유지여부 판단
-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나. 신용정보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 개인기업/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개인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질서 문란 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공공기록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공 가능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현재 회사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처리 위탁 : 해당사항 없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본인신용정보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성 명	직 위	부서	연락처
박상헌	과장	경영기획팀	02-6925-1814

[별지 제1호서식]

고객권리 안내문

본 내용은 고객의 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철회권 등 각종 권리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고객권리 안내문"입니다.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1.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2. 고객은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 권유(이하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1.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당사 대표전화 : 02-6925-1814 (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00~오후 5:00)

※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당사 대표전화 : 02-6925-1814 (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00~오후 5:00)

※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당사 대표전화 : 02-6925-1814 (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00~오후 5:00)

※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 신용 정보(주) : 02-2122-4000 / 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0 / www.kisinfo.com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6000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대표전화 : 02-6925-1814 (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00~오후 5:00)
 - 금융투자협회 고객만족센터 : 1588-2133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 국번없이 1332

[별지 제2호서식]

신용정보 보안 약정서

주식회사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_____(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업무상 제공·활용하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업무상 제공·활용하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상호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목적 외 사용 금지)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는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 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고객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또는 다른 매체)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가공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 (활용 통제 및 전담 관리자 지정)

-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하며, 각각에게 전용 ID 부여 및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이용자가 고객 신용정보에 접근할 경우 ID 및 패스워드를 통해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이용자의 고객 신용정보 접근 및 활용에 대해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위탁자"의 고객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각 이용자의 ID 및 패스워드의 공유·누설을 금지하며, "수탁자"는 각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신용정보의 송수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고객정보를 전산데이터의 형태로 상호 송·수신하는 경우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고객정보 폐기 및 반납)

1.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대해 사용 또는 보관기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 정보를 폐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관기간에도 불구하고 동의철회권을 행사하는 고객을 대신해 "위탁자"가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수탁자"가 고객 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위탁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위탁자"는 "수탁자"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폐기 또는 반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의 사무실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책 임)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탁자"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위탁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7조 (교 육)

"수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오·남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8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이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고객정보의 제공 또는 활용과 관련한 계약이 유효한 한 이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이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인(신용)정보 업무처리 수탁업체 점검 체크리스트

수탁업체명	계약기간 (YYYY-MM~ YYYY-MM)	위탁.용역.제휴 업무내용	개인정보제공방법	(위탁)금융사 담당부서
			(예: 전용선 연결, 내부시스템 접근권한부여, 파 일, 문서, 기타)	
위탁사의 개인정보 제공항목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시]

No.	점검부문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미흡)	미흡시 조치결과
1	위탁계약	위탁사가 수탁사에 고객정보 제공시 업무 위·수탁 계약서, 약정서 등 에 명시된 범위내에서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지		
1-1		위탁사가 수탁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고객 으로부터 동의 받았는지		
2	정보조회 범위	위탁사가 수탁사에 고객정보 제공시 계약서, 약정서 등 근거에 따라 수탁사에게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지 (예 : 업무 범위 외 개인(신용)정보를 과다 조회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접근권한 관리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는지		
4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는지		
5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6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개인(신 용)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씩 발급하고, 다른 개인(신용)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지		

7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지		
8	비인가 접근통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하는지		
9		취급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사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네트워크 통제 등이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10		비밀번호 관리	개인(신용)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적용하는지	
10-1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계정의 비밀번호 관리는 적정한지			
11	접근기록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고 있는지		
12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13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14	정보파기	수탁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파기하고 이를 위탁사에 보고하고 있는지		
15	정보보호 교육	수탁사의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게 수탁사 또는 위탁사가 정기적으로 개인(신용)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 일자 : 20 . . .

점검 부서 :

점 검 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통지 요청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신청인(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성명		연락처(휴대폰)	
통지주소			

*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불가)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정보 및 조회기간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정보			
조회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정보만 조회 가능합니다.

■ 조회목적

--

* 본 요청서에 의한 통지서는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우송료 등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약 7일 정도의 기간 소요)

* 통지를 요구하는 고객은 본인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서명)